



#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전용식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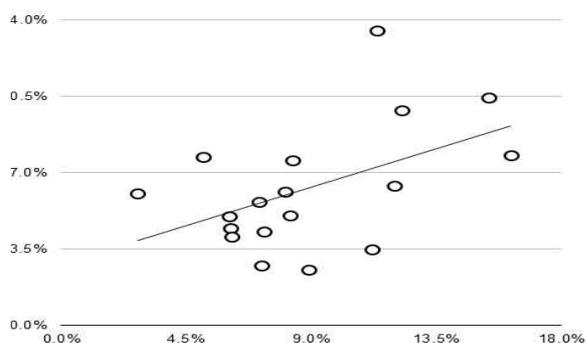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인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일용임금 등은 상승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0.13% 하락함. 자동차 보험료 하락의 원인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보험회사들의 경쟁 심화, 그리고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일용임금 등 보험금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용임금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등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세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금 원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 상승 압력을 확대시키고 자동차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인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일용임금 등도 상승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0.13% 하락함
  - 같은 기간 연평균 상승률 기준으로 외래진료비는 1.87%, 한방진료비는 4.9%, 입원진료비 2.1%, 병원검사료 1.9%, 자동차 수리비는 1.1% 상승함
  -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료가 하락한 원인은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보험회사의 경쟁 심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데,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일용임금은 4.3% 상승함
  -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차년도 일용임금 증가율 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보임(〈그림 1〉 참조)<sup>1)</sup>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사망 지급기준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의 노임과 제조업부문 단순노무종사자의 노임을 합산, 평균하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음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1.7%, 일용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2% 상승함(〈표 1〉 참조)
-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15.2%로 확대되고 일용임금 상승률도 확대될 것임

〈그림 1〉 최저임금 인상률과 월평균 일용임금 증가율



〈표 1〉 최저임금과 일용임금 인상률

구분	최저임금 인상률	일용임금 인상률
2015	7.1%	2.7%
2016	8.1%	5.6%
2017	7.3%	6.1%
2018	16.4%	4.3%
2016~2018 CAGR	11.7%	5.2%

주: 2019년 일용임금 인상률은 전망치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 일용임금 상승은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등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상해에 대해 지급하는 대인배상 보험금 중 소득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피해자의 소득인데, 일용임금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됨
  -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위자료, 치료비와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을 배상해야 하는데,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됨
  -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의 80% 이상이 일용임금 기준으로 지급됨
  - 상실수익과 휴업손해로 지급된 1인당 평균 보험금은 FY2010 109.2만 원에서 2016년 178.0만 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동기간 일용임금 연평균 증가율은 5.2% 증가함(〈표 2〉 참조)
  - 2013년부터 일용임금 증가율이 둔화되며 1인당 평균 보험금 증가세도 둔화되었고, 2014년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율이 14.4%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0.9%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임(〈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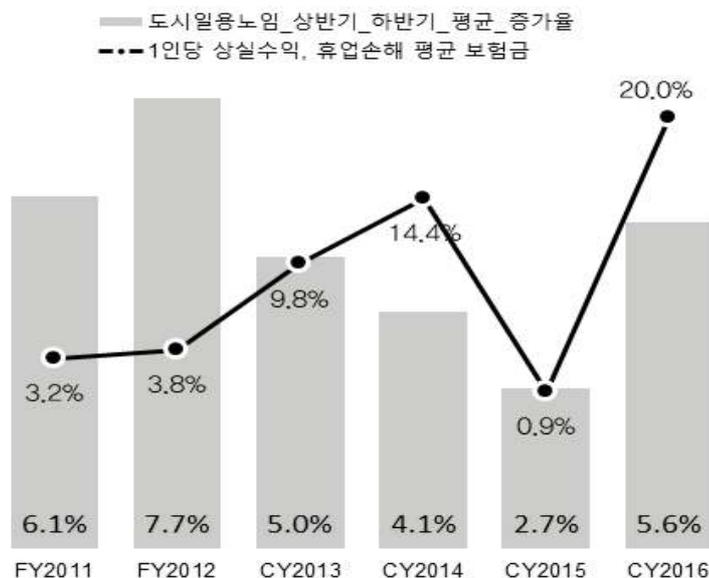
〈표 2〉 임금수준과 상실수익 및 휴업손해 1인당 평균보험금

(단위: 만 원)

구분		FY2010	FY2011	FY2012	2013	2014	2015	2016
사망	상실수익	5,858.3	5,919.6	6,105.9	6,330.5	6,391.1	6,862.4	7,930.9
후유장해	상실수익	1,724.7	1,754.8	1,794.7	1,812.1	1,766.6	1,743.3	1,823.8
부상	휴업손해	43.8	44.3	43.9	46.3	52.0	54.9	57.3
일용임금 기준 보험금 비중		79.2%	80.5%	82.1%	82.4%	84.0%	85.1%	85.5%
1인당 상실수익, 휴업손해 평균보험금		109.2	112.7	117.0	128.5	147.0	148.3	178.0
		-	(3.2%)	(3.8%)	(9.8%)	(14.4%)	(0.9%)	(20%)

주: 2010년과 2011년 월평균 일용임금과 최저임금은 CY 기준으로 보험금 통계기준인 FY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그림 2〉 일용 노임 증가율과 1인당 상실수익, 휴업손해 평균 보험금 증가율



자료: 보험개발원

-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크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한 일용임금 상승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2016년 대인배상 보험금 3조 7,929억 원 가운데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보험금 비중은 21.9%로 2010년 26.4%에 비해 하락하고 있음(〈표 2〉 참조)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 상승률이 확대될 경우 1인당 상실수익·휴업손해 보험금 증가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대인배상 지급보험금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위자료	5,050	4,759	4,831	4,320	3,882	4,023	4,075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8,770	8,315	7,973	7,120	7,442	7,862	8,077
대인배상 비중	26.4%	26.0%	24.5%	24.1%	23.1%	22.1%	21.9%
치료비	10,582	10,034	10,073	8,839	10,637	11,952	13,209
향후치료비	8,064	8,158	8,825	8,493	9,461	10,776	11,158
대인배상 합계	33,228	32,040	32,593	29,579	32,267	35,612	37,929

자료: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압력 억제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인상 등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18년 7.38%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는 2010년(6.55%) 인상 이후 8년만임<sup>2)</sup>
- 지속적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압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대인보험금 증가의 원인인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등 비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보험금 원가 상승분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음<sup>3)</sup>
  - 보상제도 개선과 경영효율화로 손해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료는 신속히 인하되는 반면,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에도 보험료 조정이 지연될 경우 보험료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음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억제는 손해율을 하락시키나 보험료가 인하될 경우 손해율이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음 **kiri**

2) 중앙일보(2017. 11. 6), “최저임금 인상 여파 장기요양보험료 8년 만에 13%인상”

3)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에 대해서는 전용식 외(2013. 3),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 2013-1 참조